파프리카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모델 및 매뉴얼

김 경 필 부연구위원 전 창 곤 연 구 위 원 김 연 중 연 구 위 원 한 혜 성 연 구 원 채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경필 부연구위원 연구 총괄, 배·감귤·버섯 운영모델 및 매뉴얼

전창곤 연구 위원 김치 운영모델·매뉴얼 김연중 연구 위원 파프리카 운영모델·매뉴얼

한혜성 연구원 백합 운영모델·매뉴얼, 사업추진 및 활성화방안 채상현 초청연구원 유자차 운영모델·매뉴얼, 사업추진 및 활성화방안

안 내 문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사업 운영과 추진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배, 감귤, 파프리카, 백합, 김치, 유자차, 새송이버섯 등 7개 품목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매뉴얼 내용이 품목별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용역 과제 발주처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요청에 따라 품목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각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출전문조직 운영방안은 수출계열화 달성 목표, 운영방안, 조직의 규모와 기준, 농가규약과 운영협의회 내용을 품목별 특성에 맞추어 작성하였고, 매뉴얼 내용은 수출 추진절차에 따르는 세부내용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의 매뉴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들은 사업계획 수립, 농가교육, 수출농가 선정과 계약, 생산·수확관리, 물량수집 및확보, 선별·포장·저장, 수출·정산, 수출·정산, 마케팅, 결산·평가 내용들입니다. 김치와 유자차는 가공식품의 특성상 원료조달 및저장, 완제품 가공공정,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관리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매뉴얼이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보다 세분화된 내용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차 례

제1장 파프리카 수출 현황 및 여건	
1. 파프리카 생산 현황 2. 파프리카 수출 현황	
제2장 수출전문조직 운영 방안	
1. 수출전문조직 단계별 달성 목표 2. 수출전문조직 운영 방안	
제3장 수출전문조직 사업 절차별 추진방안	
1. 사업 추진절차 ····································	
참 고 문 헌	57

표 차 례

제1장

班 1- 1.	파프리카 재배면적과 생산량1
丑 1-2.	파프리카 재배작형2
丑 1-3.	파프리카 작형별 출하시기2
丑 1-4.	가락동 도매시장 파프리카 취급규모4
丑 1- 5.	가락동 도매시장 파프리카 월별 평균단가5
丑 1-6.	파프리카 연도별 수출 실적6
丑 1-7.	일본시장에서 국별 시장점유율 추이(물량기준)6
丑 1-8.	수출규모별 업체수7
丑 1-9.	'07년 일본 동경도 도매시장 연간 거래가격8
표 1-10.	연도별 수출목표9

그림 차례

제1장	
	재배형태별ㆍ지역별 단수
그림 1-2.	가락동 도매시장 파프리카 월별 취급량4
제2장	
그림 2-1.	수출계열화 업체의 조직체계15
그림 2-2.	수출계열화 업체의 운영체계와 임무17
제3장	
그림 3-1.	계열화조직 수출사업 추진 절차도29

제 1 장

파프리카 수출 현황 및 여건

1. 파프리카 생산 현황

1.1. 파프리카 재배면적 및 생산량

- 파프리카의 연도별 재배면적은 2000년 110ha에서 2007년 342ha로 연평균 25%, 2000년 대비 3.1배 증가하였음<표 1-1>.
- 생산량은 2000년에 7,500톤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7년에는 32,400톤에
 이르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30ha로 가장 많고, 강원, 전남, 전북, 경북 경기, 충남, 제주, 충북 순으로 많음.

표 1-1. 파프리카 재배면적과 생산량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
면적(ha)	110	133	149	171	260	249	304	342
생산량(ton)	7,500	12,146	15,734	16,380	20,551	21,631	26,378	32,398

주: 2007년은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모니터 및 생산농가 조사결과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2. 파프리카 주년공급 체계

- 국내 내수 및 수출을 위해 주년공급체계가 중요함. 따라서 7월 하순~9월 상순에 파종하여 11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수확하는 겨울작형과 1월에서 3월에 파종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수확하는 여름작형으로 나누어 생산되고 있음<표 1-2>.
- 겨울작형은 경남 진주·함안, 전남 화순·영광, 전북 김제·익산 등과 같은 평난지 지역과 중부지역의 유리온실 시설농가에서 재배되며, 여름작형은 강원 평창·화천, 경남 합천, 전북 남원 등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됨.
- 파프리카는 겨울작형과 여름작형이 수확시기가 중복되지 않는 1~4월, 8월 중순~10월이 단경기로서 국내가격이 높아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표 1-2. 파프리카 재배작형

작형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수확기 재배지역				
겨울	7 00 0 10		0 7 00 0 1		7~9월 8~10월		11월~	경남(진주·함안), 전남(화순·영광),
거돌	7~9혈	8~10절	익년7월	전북(김제) 등 평난지				
서로	1 00	2 [8]	C 100	강원(평창·화천), 경남(합천), 전북(남원)				
여름	여름 1~3월 3		6~12월	등 고랭지				

자료: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08).

○ 파프리카 작형별 출하시기가 7월과 12월에 중복되어 출하물량이 많고 가격이 매우 낮은 시기임.

표 1-3. 파프리카 작형별 출하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겨울												
여름												

1.3. 파프리카의 고품질 및 고단수를 위한 시설형태

- 2007년 시설 유형별 재배면적은 유리온실이 101ha로 총 재배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비닐온실 재배면적은 경남지역이 99ha, 강원지역이 78ha, 전남・전북지역이 각각 31ha, 14ha가 재배되었음.
- 시설형태별 2007년산 파프리카의 단수 추정
- 시설유형별 10a당 수확량은 유리온실의 경우 강원지역 9,000kg, 중부지역 12,000kg, 영·호남과 제주지역 13,500kg으로 평균 12,300kg임
- 비닐온실의 경우 강원지역 7,050kg, 중부·호남지역 8,250kg, 경남지역 9,000kg로 평균 7,800kg으로 추정
- 2007년 파프리카 재배면적 342ha에서 평균단수 9,473kg을 적용하면 총
 생산량은 32,400톤으로 추정



그림 1-1. 재배형태별ㆍ지역별 단수

1.4. 파프리카의 유통실태

○ 가락동 도매시장의 파프리카 반입량은 2004년 921톤에서 2007년 5,646톤으로

518% 증가하였음. 가락동 도매시장의 파프리카 거래금액은 2004년 20억 원에서 2007년 178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국내시장에 출하되는 파프리카의 품질이 개선됨과 동시에 파프리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파프리카의 1kg당 연평균 단가는 2004년 2,185원에서 2007년에는 3,150원으로 965원 상승하였음<표 1-4>.

표 1-4. 가락동 도매시장 파프리카 취급규모

단위: 톤, 백만원, 원/kg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취급량	921	2,231	4,141	5,646
취급액	2,013	5,201	11,387	17,784
평균단가	2,185	2,331	2,750	3,150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가락동 도매시장의 파프리카 반입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월별 반입량은 여름작형과 겨울작형이 중복되어 출하되는 7월과 12월에 집중되고 있음.

그림 1-2. 가락동 도매시장 파프리카 월별 취급량 -04년 ---05년 ---06년 ---07년 톤 1,000 800 600 400 200 1월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가락동 도매시장 파프리카의 월별 평균단가는 반입량이 적은 2~4월에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반입량이 집중되는 7월과 12월은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음<그림 1-2, 표 1-5>.
- 그러나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평균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파프리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표 1-5. 가락동 도매시장 파프리카 월별 평균단가

단위: 원/k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	4,995	5,964	4,353	4,155	3,026	2,463	1,567	2,288	3,301	3,966	3,478	2,524
2006	3,885	4,141	4,161	3,422	2,843	2,209	1,597	2,409	4,188	3,056	2,230	2,012
2005	3,146	3,723	3,574	3,720	1.871	1,812	1,127	2,297	2,998	3,398	2,107	2,026
2004	2,777	3,538	3,214	3,307	1,784	1,526	1,020	1,810	3,115	3,111	2,494	1,705
평년	3,701	4,341	3,826	3,651	2,381	2,002	1,328	2,201	3,401	3,383	2,577	2,067

주: 평년가격은 2004~2007년 월별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2. 파프리카 수출 현황1

2.1. 재배・생산・수출 현황

파프리카 수출물량은 2005년에 17,845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하여
 최근 2007년에는 14,185톤으로 감소하고 있음.

^{1.}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수출 품목별 대책」자료(2008) 인용하여 작성.

- 수출단가는 국내 가격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있음. 2006년에 kg당 수출 단가는 3.13달러이며 국내가격으로 환산하면 2,992원으로 국내가격 2,750원 보다 높았으나, 2007년은 오히려 수출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았음.
- 수출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국내 판매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나, 원달러 환율이 낮아져 수출단가가 국내가격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편임
- 국내 가격이 높은 시기인 1~2월에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크게 낮아 이 시기에는 수출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구 분		'05	'06	'07
	물 량(톤)	17,845	14,604	14,185
수 출	금액(천불)	53,145	45,732	47,154
	수출단가(불)	2.98	3.13	3.32
단가/kg	수출단가(원)	3,052	2,992	3,084
	국내가격(원)	2,331	2,750	3,150

표 1-6. 파프리카 연도별 수출 실적

○ 국내 생산량의 45%가 수출되고 있으며, 대부분 일본시장임. 일본 시장에서 한 국산의 점유율이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4에는 69%, 2005년에는 70%, 2007년에는 66%로 60% 이상 한국산이 점유하고 있음.

표 1-7. 일본시장에서 국별 시장점유율 추이(물량기준)

구 분	일본수입규모	한 국	화 란	뉴질랜드
'04	23,832톤	69%	19%	12%
'05	26,833톤	70%	19%	11%
'06	22,803톤	64%	21%	15%
'07	21,811톤	66%	17%	17%

자료: 일본 재무성 수출입 통계(www.mof.go.kr)

주: 수출단가(원)는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것임. 2005년 1,024원, 2006년 956원, 2007년은 929원으로 계산.

- 최근 일본시장에 한국산 파프리카 수출이 60%로 둔화되고 있는 것은 국 내가격의 상승과 일본에서 잔류농약 검사 강화 때문임.
- 일본 시장에서 국내산 파프리카를 가장 선호하는 색상은 적색으로 유통 물량의 60% 차지하고 있음.

2.2. 수출전문조직의 계열화 현황

- 수출하고 있는 업체 수는 31개 업체이고 이중 50만불 미만이 11개 업체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달러 이상 업체는 5개로 16%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전문조직이 영세함을 알 수 있음.
- 수출전문조직의 영세화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전문조직을 계열화하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수출전문조직은 농가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출 물량을 확보 수집하고 있어 물량 확보차원에서 농가와 수출전문조직간의 계약관계를 명시화할 필요가 있음.

구분 계 50만불미만 50~100만불 100~300만불 300만불이상 업체수 31업체 7 8 5 11 비중 100% 35.5 22.6 25.8 16.1

표 1-8. 수출규모별 업체수

2.3. 수입국가의 소비 추이

○ 일본은 파프리카 생산 초기에는 고급채소로서 업소용 소비중심이었으나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일반가정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일본 내에서 파프리카는 연중 소비되고 있으며 화란산은 6~10월에, 한국산과 뉴 질랜드산은 11~6월에 주로 유통되고 있음.

- 파프리카 포장단위는 대부분 5kg이며 개당 250g으로 큰 것은 1상자에 20개, 125~140g의 작은 것은 35~40개를 포장하며,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1개에 167~172g으로 1상자에 29~30개가 선호되고 있어 일본은 주로 중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미국은 대과를 선호하며 녹색, 적색, 노란색 순으로 기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2.4. 가격 및 품질 경쟁력

-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kg당 474~919엔대를 형성하여 가격 및 품질(물량 점유율 66%)면에서 네덜란드산과 뉴질랜드산 보다 경쟁력 있음.
- 일본시장에 동절기(12~5월) 수출경쟁국은 뉴질랜드이며, 하절기(6~10월) 에는 네덜란드산과 경합하고 있음. 향후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경쟁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구 분	한국산	화란산	뉴질랜드산
평 균(엔/kg)	544	681	747
가격대(엔/kg)	474~919	482~1,785	537~1,882

표 1-9. '07년 일본 동경도 도매시장 연간 거래가격

2.5. 수출 애로사항

- 화훼, 채소류 등 기존의 생산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시설이 노후화 된 상태임.
- 국내 가격 상승시 국내출하 선호로 수출물량 확보 어려움.
- ㅇ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국산 구매 기피 및 작기에 따른 수입량 변동
- ㅇ 까다로운 검역조건으로 추가비용 발생

2.6. 수출 확대방안

□ 기본방향

- ㅇ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기반 조성
- 수출전문조직과 농가 결속력이 강한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브랜드를 활성화
- 효율적인 마케팅활동으로 신시장 개척과 기존시장 소비저변 확대

□ 수출목표 및 달성수단

- 2007년에 수출량은 14,185톤에서 2008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14,942 톤, 매년 5.3%증가하여 5년 후인 2012년에는 18,400톤을 목표로 함.
- 목표수립근거는 일본에 수출경쟁국가인 화란과 뉴질랜드의 대일본 수출 점유율을 우리가 일부 잠식하고, 미국에 진출하는 것으로 가정

구 분	'07(현재)	'08	'09	'10	'11	'12
수출목표(MT)	14,185	14,942	15,701	16,581	17,467	18,400
재배면적(ha)	342	378	416	458	500	546
추가면적(ha)	_	36	38	42	42	46

표 1-10. 연도별 수출목표

- 주: 재배면적 추정은 현행 단수를 곱해 산정한 것이며, 수출이 생산량의 50%로 가정하고 재배면적을 환산하였음.
- 수출전문조직이 일정수준의 시설을 갖춘 농가와 수직계열화를 통해 품질
 관리 및 안정적 물량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수출목표 달성 추진
- 천적재배, 저농약 재배 등 친환경 농법을 확대하고 국가 공동브랜드 '휘모리' 홍보를 강화하며, 동경식품박람회 개최시 '휘모리 홍보관' 지속 운영, 대형 유통업체 홍보 판촉전 확대 개최, 언론매체 홍보 등을 추진함.

○ 안전성 관리 체계 TV 홍보, 생산이력추적시스템 소비자 체험(대형유통업체 판촉 활용), 바이어 초청 생산현장 견학 등으로 국산 파프리카 안전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파프리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 개발 및 요리 교실·TV 등을 통한 홍보로 일반 소비자 관심을 제고시킴.

제 2 장

수출전문조직 운영 방안

1. 수출전문조직 단계별 달성 목표

- 계열화는 농장에서부터 선별/포장/등급화 과정을 거쳐 시장에 판매하는 단계까지 일관화, 체계화하는 것임.
- 농장은 농가, 생산자 단체, 법인일 수 있으며, 계열화 수출전문조직과 재배면적, 품종선택, 출하시기 조절, 출하량을 미리 결정하고 생산함. 생산은 품질향상을 위해 GAP, 또는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에 의해 생산함
- 농장은 품위 규격에 따라 크기, 모양, 색깔, 무게 등을 고려하여 선별/포장 하여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수송, 선적, 판매되도록 함
- 시장은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여 공급하며, 수출은 국가별, 시기별로 계약 물량에 대해 오차 없이 수출
- 홍보, 전시, 요리법 등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
- 수출계열화 전문조직은 컨설팅기구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컨설팅업체는 농가의 재배교육,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을 위한 생산교육, 병해충방제기술 외에 더 나아가 농가가 하나의 경영체라는 경영마인드 고취를 위한교육/지도를 담당함.

- 운영위원회는 수출전문조직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존재하며, 사업계획수립, 내수/수출목표 등을 수립하고, 실행되도록 해야 함. 특히 농가와 수출전문 조직간의 계약관계, 수출계열업체와 외국 바이어와의 계약체결, 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결정 및 정산 등을 협의에 의해 실시해야함. 생산농 가의 생산비용절감을 위해 원자재공동구매 후 분배도 중요한 업무임.
- 파프리카 수출전문조직의 계열화 수준을 평가하면 아래와 같음.
- 평가결과는 품목별 수출전문조직의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한 현장 조사평가 결과에 근거함
- 계열화 수준의 평가 척도는 수-우-미-양-가 5단계로 구분함
- 계열화 수준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계열화 이행 항목	계열화 단계 평가				
	수	우	미	양	가
·계약재배 내용 이행	0				
·수출물량 공급과 내수 출하비율	0				
· 품질(ERP, GAP, 이력추적시스템)	0				
·정산관리 시스템			0		
·수출가격 결정구조			0		
· 농가-수출전문조직 연계구조	0				
· 유통시설 가동률 등	0				
·수출출하 창구 일원화	0				
·수출브랜드 일원화 및 비중	0				
종합평가	0				

○ 종합 평가결과

- 파프리카는 생산지역이 국한되어 있고, 생산량 중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임. 이미 생산자와 수출전문조직간에 계약재배의 이행 정도가 높고, 생산량 중 수출비중이 내수에 비해 높은 편이며, 농가-수출전문조직 연계구조, 유통시설 가동률 등, 수출출하 창구 일원화, 수출브랜드 일원화 및 수출을위해 전사적관리(ERP), GAP, 이력추적시스템 구조는 매우 양호한 편임

- 그러나 수출창구가 장기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수출가격 결정시 농가의 참여도가 다소 약하며, 이로 인해 정산관리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 ㅇ 파프리카 계열화 달성 목표
- 파프리카 계열화 달성 수준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수출가격 결정 및 농가 정산에는 미약한 부문이 있음
- 현재 정산 또는 수출가격 결정에 약간 미흡한 부문이 있으나, 이를 개선 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파프리카 수출의 계열화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ㅇ 파프리카 수출물량 목표 달성 방법
- 파프리카 수출물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정의 장애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함.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은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을 통한 수출물량의 조직화, 규모화, 고품질화로 설정할 수 있음
- 핵심 장애요인: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주년 공급이 가능하도록 작기 조정
- 품질 관리: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크기 및 품질 수준 생산,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정농약 사용, 잔류농약 규제
- 가격경쟁력 향상: 점차 약해지고 있는 수출 경쟁국과의 가격경쟁력 제고

2. 수출전문조직 운영 방안

2.1. 조직 주체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운영주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무역업체, 가공업체, 농협 등의 생산자 조직이 될 수 있음.

- 다만, 수출전문조직의 성격 및 형태에 구애받지는 않으나 수출물량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수출물량 확보, 품질관리, 유통시설 확보, 해외시장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 등의 기반과 시스템, 조직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수출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단일품목이나 다품목 수출 여부에는 구애받지 않음.
- 현재 파프리카 작목에 대해 수출계열화 업체수는 10개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2~3개는 이미 계열화되어 있어 일부 업무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 되고, 신규 7~8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체계 및 운영 방안

가. 조직 체계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은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출입까지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설로 컨설팅업체,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음.
- 컨설팅 기구는 계열화된 농장, 공장, 시장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며, 농가에게는 재배교육, 농가의 경영마인드 고취,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함
- 농장 또는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품종선택, 출하시기, 시기별 출하량을 고려 하여 재배함
- 선별, 포장 관리자는 품위와 등급을 정해진 규격대로의 선별을 관리하며, 소유하고 있는 유통시설, 구축된 물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계열화된 수출전문조직은 내수와 수출비율을 정하여 생산자가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수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홍보, 전시활동을 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
- 운영위원회는 수출계열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출가격결정 및 정산을 투명하게 결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동구입하여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며 수출전문조직의 회계감사를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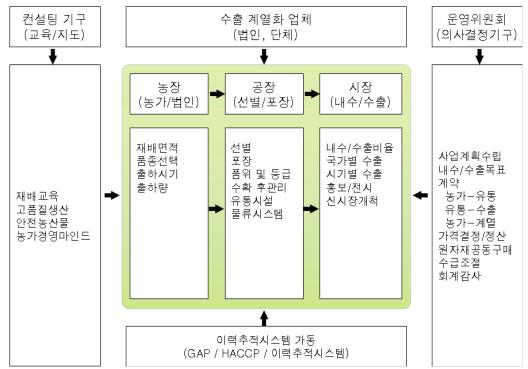


그림 2-1. 수출계열화 업체의 조직체계

나. 운영 체계

수출계열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의 소득안정, 수출계열업체의 수익증대,
 국가의 수출증대 등임.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은 농가로부터 계약된 물량을 납품받고, 농가에게 가격을 보장해야 함. 생산자 단체 또는 농가와 수출전문조직은 반드시 가격과 대금 지급 방법 등이 서면으로 계약되어야 함.
- 자조금 형성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더 나아가 품질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계약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을 경우와 높을 경우가 있어 농가소득이 불안정할 수 있음.
- 수출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가로부터 계약에 의해 물량을 공급 받고, 공급받은 물량을 수출함. 수출시 수출전문조직은 수입업체와 가격 및 물량 등을 서면으로 계약해야 함.
- 수출전문조직은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계약물량을 확보하고, 농가 에게는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함.
- 수출이나 내수가격 변동이 심할 것을 대비하여 가격이 높을 때에는 일부 이익금을 적립하고, 가격이 낮을 때는 이익금 중 일부를 농가에 환원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함
- 판매가격과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파프리카의 품질이 좋아야 하므로 생산에서부터 선별, 포장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여 집중적 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운영위원회는 수출계열화업체의 운영에 대한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함.
- 운영위원회는 농가와 재배 계약건, 자조금의 운영실태, 판매량, 판매가격, 비용절감, 출하조절 등 안정적으로 계열화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 및 운영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 운영위원회는 수출전문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 수급조절, 품질 향상을 위한 품위기준 작성, 농가교육, 회계감사 등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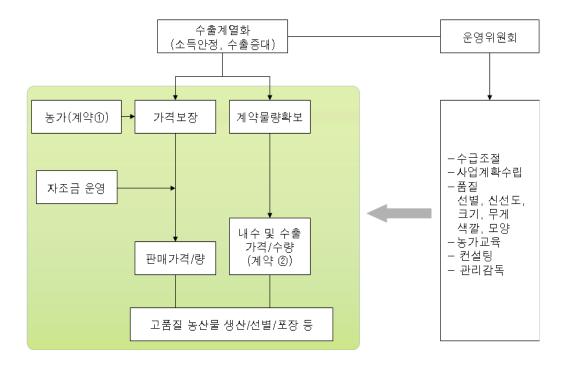


그림 2-2. 수출계열화 업체의 운영체계와 임무

다. 농가 자격요건

- 농가의 자격요건은 계열화 조직의 구성 및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상품화의 일관 시스템을 제고시키기 위해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구성 기구에 속하면서 수출전문조직 운영방침에 따르는 생산농가만으로 자격요건을 정해야 함.
- 수출전문조직에 가입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또는 일정 교육을 연수한 농가
- 파프리카 모양, 중량, 크기 등 품질 속성을 향상시키는 데 품질개선매뉴얼에 따라 재배과정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농가
- 경영교육, 수출교육, 재배 기술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 농가가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사업에 참여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소득의 안정임.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급조절이며, 수급 조절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작황 및 품질에 의해 수출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수출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됨.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농가는 자조금 제도에 동참할 경우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음.

2.3. 조직의 규모와 기준

가. 수출목표 설정

- 2007년 국내 생산량 32,398톤 중 43.8%인 14,185가 수출되고 있음.
- 주 수출국은 일본이며, 일본의 2007년 수입량 21,811톤 중 한국산이 66%에 해당하고, 화란과 뉴질랜드는 각각 17%임
- 일본의 수입량은 2000년 이후 22,000~24,000톤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음.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이 수출 경쟁력을 갖출 경우 5년 후에 화란과 뉴질랜드의 점유율을 절감시키고, 우리가 현재 일본 수입량의 66%에서 80%를 목표로 하면 현재 수출량보다 30% 증가한 18,400톤에 달함

나 재배면적 확보

- 우리나라는 파프리카 재배면적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2007년 재배면적은 342ha이고, 생산량은 32,398톤이며, 평균 평당 30kg를 생산함.
- 시설재배의 평당 평균 생산량은 41kg, 비닐온실은 27kg으로 추정
- 파프리카 수출물량 18,400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은 약 200ha가 필요함.
- 수출물량을 과부족 없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400ha정도 계약재배가 이루어

져야 함. 200ha이면 생산량과 수출량이 같지만 생산량의 50%를 수출한다면 계약재배는 400ha가 이루어져야 함.

다. 수출계열화 업체 수

- 수출전문조직 수는 조직별 관리가 가능한 면적수준과 생산량 중 수출출하 물량 비중에 따라 변동됨.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이 관리가 가능한 면적이 35ha이고 생산물량의 50%를 수출한다면 필요 수출전문조직수는 12개 내외임. 관리 가능면적이 70ha이고 생산량의 70%를 수출할 경우에는 필요 수출전문조직수는 4개 내외 임
- (목표수출물량 18,400톤) ÷ (조직단위당 수출물량 1,600톤: 관리가능면적 35ha×94톤/1ha×수출물량 50% 가정) ≒ 12개 조직
- (목표수출물량 18,400톤) ÷ (조직단위당 수출물량 1,600톤: 관리가능면적 70ha×94톤/1ha×수출물량 70% 가정) ≒ 4개 조직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체 한개 당 계약면적이 35ha가 되려면 농가 호당재배 규모는 0.5ha이므로 농가수는 70농가 정도로 구성됨. 조직체 계약면적이 70ha이고 농가호당 재배규모가 0.5ha일 경우 농가수는 140농가임.

2.4. 수출전문조직 운영위원회 및 수출전문조직 정관

가. 수출전문조직의 운영위원회

- 0 목적
- 고품질 농식품 생산과 수출확대를 위해 육성한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운영 원활화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증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협의
 - * 운영방법은 계열화 업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구성

- 계열화 업체와 계열화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지자체, 농협 등 외부위원도 포함
- 구성원은 농가 수와 재배지역 등을 감안하여 구성

0 운영

- 운영위원회는 계열화 업체와 생산농가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대등한 지위 에서 운영

ㅇ 업무

- 운영위원회는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유지와 활성화를 전담하는 중요한 요인임
- 수출전담 인력 확보와 전담부서 설치 등 수출업무를 관리하는 운영위원회 및 조직 구축이 필요
- 운영 조직은 조직 참여농가 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련회의 주도, 참여자의 역할 정립, 품질관리기준 설정, 신규 산지 및 품목 지정과 변경, 마케팅 수립과 판로 개척 및 확대, 홍보 및 판촉활동, 조직운영의 분쟁 및 불만사항 해결 등수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
- 특히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확보,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운영위원회는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전체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 하고 물류와 경로관리 등 상류기능을 수행

ㅇ 주요 임무

- 규약제정, 사업계획 수립 등 운영관련 사항
- 품종, 재배이력 관리, 안전성 확보, 선별 등 품질관리 사항
- 브랜드 육성, 바이어, 해외판촉 및 홍보 등 수출관련 사항
- 정산, 회계처리, 조직원 교육, 운영상황 평가 등 일반사항

나. 수출계열화 사업의 규약

파프리카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사업 규약(예시)

제정 년 월 일

- 제1조 (목적) 파프리카 계열화 수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생산에서부터 수출단계까지 총괄하는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 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열화 수출사업의 조기정착과 유통확대를 통해 참여농가들의 생산기반 구축 및 소득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 사업은 「파프리카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사업」으로 육성한다.
- **제3조 (사업)** 본 계열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 ① 파프리카 계열화 수출사업의 정착, 홍보, 수출확대에 관한 사업
 - ② 품질향상과 균일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및 컨설팅 사업
 - ③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모든 사업
- 제4조 (운영위원회) 파프리카 계열화 수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수는 〇〇명으로 하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〇년 으로 한다.
- 제5조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의 ⅓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① 정기회의는 매월(분기별)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② 회의안건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제에 의해 의결한다.
- **제6조 (운영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는 ○○계열화 수출사업의 조기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수출계열화 업체의 사업계획서 검토
 - ② 내수 및 수출목표 설정
 - ③ 생산자, 유통업체, 수출업자간의 계약체결
 - ④ 가격결정 및 계약 이행사항 검토
 - ⑤ 원자재 공동구입/분배 의사결정
 - ⑥ 수급조절 등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 (조직의 설치 및 운영) ○○계열화 수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컨설팅, 마케팅 등 실무추진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 (회원농가의 자격)** ○○계열화 수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로 하다.
 - ① 파프리카 생산경험이 ○년 이상인 농가
 - ②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Oha 이상인 농가
 - ③ ○○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
 - ④ 생산관리, 출하관리 등 파프리카 생산 및 출하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농가
 - ⑤ 기타 계열화 수출사업 참여 및 추진 의지가 높은 농가
-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① 회원농가는 자조금으로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 회원농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생산관리 프로그램, 출하방법, 교육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회원농가는 ○○계열화 수출사업 조기정착 및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 지침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제10조 (탈퇴)** ○○계열화 수출사업의 회원을 탈퇴하려고 할 때는 탈퇴 의사를 우영위원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다.
- 제11조 (제명) 회원이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고 수출계열화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 제12조 (재원의 조달) 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 ① 자조금 ② 기부금 ③ 기타 수입
- 제13조 (재정운영) 재정운영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파프리카 수출전문조직 정관(예시)

정 (定 款)

○○ 파 프 리 카 계 열 화 수 출 전 문 조 직

제1장 총 칙

- **제1조 (상호)** 본 조직의 명칭은 ○○파프리카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조직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대행 및 생 산관리 서비스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다음사 항을 행하다.
 - 1. 농산물의 재배
 - 2. 농산물의 수출
 - 3. 농산물의 도·소매
 - 4. 생산에 필요한 자제의 수입 및 판매
 - 5. 농산물의 집하장 운영 및 수출농산물의 검사
 - 6. 농산물생산관련 서비스업
 - 7.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의 일체
- 제3조 (주주의 자격) 본 조직의 주주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 **제4조 (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은 ○○도 ○○시에 둔다.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 (공고방법)** 본 조직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 **제6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주식의 내용)**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써 보통주식으로 한다.
- **제7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하다.
- **제8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 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액은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 **제10조 (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 주원은 ○권, ○○주권, ○○ ○주권 ○종으로 한다.
- 제11조 (주원의 명의 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는 본 회사의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는 본회사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식의 양도 제한)

- (1) 본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 (2) 비농업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8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 (3)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8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제13조 (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재권판결결정본
 - (2)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파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 제14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할 수 없다.
- **제15조 (주주의 주소 신고 등)** 주주나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

- (1)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대표 이사가 소집한다.
- (2) 임시 주주총회는 주주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표이사 가 소집한다.
- **제18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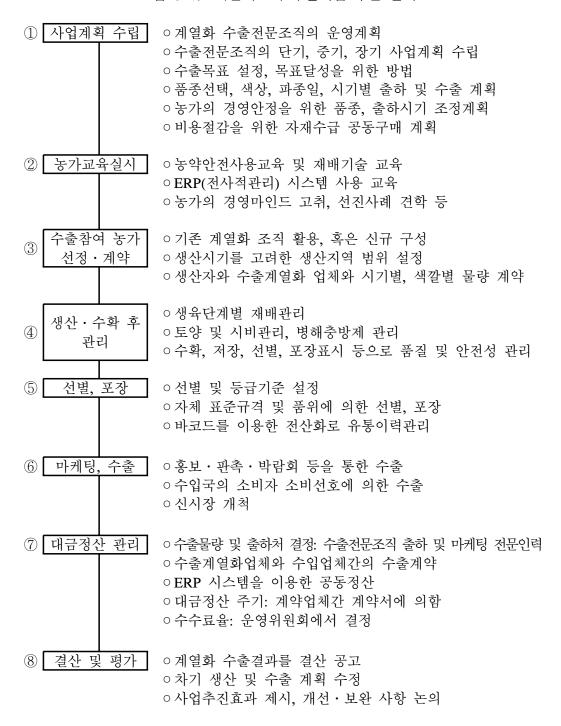
제 3 장

수출전문조직 사업 절차별 추진방안

1. 사업 추진절차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3-1>과 같음.
- 사업계획 수립, 실행 그리고 정산 및 차기 계획수립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계열화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① 사업계획수립 ② 농가교육 실시 ③ 수출 참여농가 선정 및 계약체결 ④ 생산, 수확후 관리 ⑤ 수집된 물량을 선별, 포장 ⑥ 국내외 마케팅 ⑦ 수출완료 후 대금 정산 관리 ⑧ 결산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차기 계획수립 단계를 거치도록 함.

그림 3-1. 계열화조직 수출사업 추진 절차도



2. 절차별 추진방법

2.1. 사업계획 수립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는 연차별로 세워야 하며 적어도 10년 정도 장기계획을 수립
- 매년 결산 후 사업계획서를 매년 연초에 수정·보완
- 사업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인력문제, 재배시설면적, 건물면적, 유통시설, 생산계획, 수출계획 등이 연차별로 수립되어야 함.
- 인력문제: 관리직과 노무직으로 구분하여 인력확보에 대한 계획과 급여 수준까지 고려
- 시설계획: 재배면적, 시설형태, 유통시설, 운송차량, 콜드체인시스템, 생산이력과 유통이력추적을 위한 Bar Code 시스템, ERP 시스템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수정·보완되어야 함
- 생산측면: 기본적으로 농가별 재배면적과 전체 재배면적이 포함되어야 하고, 파프리카는 색깔이 3종류가 있는데 색깔별·품종별로 재 배면적 및 생산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유통측면: 파프리카의 연도별·국가별 수출 목표 설정, 수출목표 달성수단, 목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기반을 강화시키고 수출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수출물량 계획이 중기·장기적으로 세워져야 함.
- 국가별: 국가별 기호도, 주 소비시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낮은 가격형성시기를 고려하여 수출량 계획
- 수출물량: 국가별·시기별·품종별로 장단기 수급계획 수립

- 재배품종,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생산계획 수립
- 재배품종별로 재배하기 어려운 품종과 재배하기 쉬운 품종이 있는데 계약 생산자, 계열화업체, 운영위원 등이 협의 하에 계획 수립
- 출하시기별 가격차이로 인해 생산자의 소득이 서로 다르므로 계약생산자, 계열화조직, 운영위원 등이 협의하에 생산계획 수립
-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성출하기가 겹치지 않도록 파종 일자를 조정하고, 또 고온, 저온 등 기온 변수에 따른 파종일자 조정, 출하시기 및 품종에 따라 가격 및 소득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계획도 설계
- 소비자의 소비선호 시기, 선호 품종, 시기별 소비량을 고려하여 생산자와 재배 시기, 재배면적 등에 대한 중장기 생산계획 수립
-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재의 공동구입 및 수입계획 수립
- 파프리카의 종자는 전량 수입하고 있어 대량으로 낮은 단가로 수입하여 비용절감 계획 수립
- 종자 이외의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공동 구입하여 비용절감 계획 수립

2.2. 농가교육 실시

- 계약농가로 선정된 이후에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및
 안전성 관리 교육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정기적인 이론 교육 및 농가 순회현장 컨설팅, 스터디 그룹의 활성화
- 재배교육
 - ·작물과 생리 / 온실 내 환경관리 / 수분관리 / 천적관리 / 착과 및 품질관리
- 안전성 및 고품질 생산 교육
 - ·농약안전사용 / 생산자 GAP / ERP시스템의 활용

파프리카 농약안정사용 규약(예시)

- ○○ 수출전문조직과 생산·출하농가(이하 농가) 상호 간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출하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약을 둔다.
- 제1조 본 규약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재배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는 한편, 안정적인 소비(판로)를 확보하여 생산·공급의 지속과 소득 증대라는 공통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 규약은 ○○ 수출전문조직에 생산물을 출하하는 전체 농가에 적용되며, 농가는 각자 서로에 대하여 '수출공동체'로서 본 규약 준수의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 제3조 농가는 관련 행정 및 지도기관의 지도와 적용 중인 '○○국 수출 파프리카 안전성 관리지침'및 '농약사용안전지침'(농림수산식품부) 을 준수하고, 시료채취 등에 협조한다.
- 제4조 농가는 파프리카의 재배에 수출전문조직에서 공급하는 농약만을 사용해야하며, 수출전문조직과 협의 없이 농가 임의로 다른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제5조** 수출전문조직의 관리자는 주 ○회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약사용 안전 관리를 점검할 수 있으며 농가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6조 농가는 농약의 사용내역을 수출전문조직에 사용 당일 전산네트웍(ERP)에 등록하여(부득이한 경우에는 FAX나 전화를 통하여) 통지할 의무를 가지며, 수확가능일자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수출전문조직이 농가에 요청하는 농약안전사용과 생산이력정보에 관련한 자료 제공에 최대한 협조한다.
- **제7조** 농가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나 수입국에서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한다.

- 제8조 농가가 본 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시, 수출전문조직은 해당농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농가는 본 규약과 이에 관련한 제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9조 제재는 적용중인 '대일 수출파프리카 안정성 관리지침' 및 '안전성 강화대책'(농림수산식품부)의 제재에 따라, 수출중단(ID 삭제), 내수중단, 출하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출전문조직에서 공급하는 농약 이외 농약의 임의 사용으로 인해 작물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 수출전문조직의 농약관리 전담직원과 협의 없이 농가가 임으로 사용한경우 및 농약사용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등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전문조직의 출하농가 구성원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 **제10조** 농가는 농산물 안전성확보와 관련한 교육 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물 병해충에 대한 기술 습득과 상호 정보교류에 노력하다.

이상의 규약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생산·출하농가는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다.

200 년 월 일

농가 성명(조직명):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

○○ 파프리카 수출전문조직

수출용 파프리카 농약안전사용 기준(예시)

본 지침은 수출대상국가와 우리나라의 농약등록상황 및 잔류허용기준을 검토하여 적합한 농약을 선정하고 안전사용시기를 재설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한 후 농약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대상국가의 잔류어용기준 자료근거 및 시기

○ 대만: 2005년 11월 ○ 미국 : 2005년 7월

○ 유럽연합: 2003년 10월 ○ 일본 : 2005년 11월

○ 캐나다: 2006년 1월 ○ 한국 : 2005년 6월

○ 호주: 2006년 1월

※ 각 국가의 등록농약 및 잔류허용기준은 수시로 일부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새로운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

2. 약호 및 주석

○ c : 카벤다짐으로 정량

○ d : 디치오카바메이트로 정량

○ dmdc :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로 정량

○ ebdc : 에틸렌비스디치오카바메이트로 정량

○ **T** : 잠정잔류허용기준(**TMRL**)

○ - :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 ()의 값 : 일본 잠정기준 값

○ '잔류허용기준' 값의 단위는 ppm(mg/kg)임

3. 약해유무 확인

국내 적용 작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약해의 유무를 확인 후 사용

4. 동일성분으로 분석되는 농약으로서 중복살포 및 혼용해서는 안되는 농약

- 가벤다, 베노밀, 지오판
- 피레스, 알파스린, 알파싸이퍼메스린
- 프로싱, 에스펜발러레이트
- 만코지, 메티람, 프로피, 치람
- ※ 혼합제 농약은 이전에 살포한 농약과 동일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5. 한국어용기준이 상대국의 기준보다 낮은 경우, 고농도살포나 중복 살포를 하지 말고 살포횟수와 살포간격에 주의해야 함
- 농가의 ERP(전산시스템) 이용 교육
- 농가는 온실 내·외의 재배환경, 농약/천적 사용내역 등을 인터넷을 통해 ERP 시스템에 직접 재배농가가 등록, D/B화하고 전산담당자가 전체회원 농가의 작물관리 상태를 체크, 필요시 농가에 조언하고 생산이력을 관리
- ㅇ 사업 참여 농가의 교육으로 농가의 경영마인드 고취
- 농가도 생산에 그치지 않고 경영마인드를 가져,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에 따른 가격 등락, 출하시기에 따른 수익 변동 등을 농가도 알 수 있도록 교육
- 농가 스스로 CEO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
- 선진지 견학,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교육
- 국내외 계열화 우수사례를 견학함으로써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필요성과 유리성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소비자 위주로 변해가고 있는 시장여건 변화와 수입농산물의 상품화와

홍보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 견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국내산 농산물이 국내외 경쟁 농산물과의 경쟁 여건 및 소비자 선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2.3. 수출참여 농가 선정・계약

- 수출농가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농가선정 전 일정기간, 일정내용에 대한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함.
- 수출전문조직 참여농가는 생산기술, 유통, 경영교육 등 일반적인 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며 계열화조직 자체교육도 포함
- 농가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출전문조직과 생산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설정
- 교육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사업시행 초기와 생산 및 수확과정, 출하 단계, 사업평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수출농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거래주체의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대표자(생산자), 수출규격 및 물량, 수매단가, 업무분담 및 비용지급, 물품인수, 물품대 및 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선과 및 포장작업, 클레임, 지체자금,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수매 및 수출 불가항력 및 면책,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선과기준 등임.
- 계약농가와 계열업체 간에 반드시 문서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파프리카의 품종
- 연도별, 월별, 수출량을 계약, 작황에 따라 일정량의 편차(±10~20%)
- 수출물량 공급과 내수 출하비율
- 단가 및 물품대금 지급 규정
- 선별 기준을 확정하고 이에 준해서 반드시 선별 포장의무
 - ·품위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게기준, 숙도, 모양, 색택, 흠집정도, 수축 현상 등이 포함

- 클레임 및 물품하자시 즉 분쟁 발생시 책임에 관한 건
- 농가이력사항으로 영농일지, 농약사용일지, 양액조성일지 등 작성하고 요구 시 제시 조건 등
- 선별 및 등급의 품위기준에 관한 규정
- ㅇ 계약 위반시 벌칙이 계약서에 명시
- 2회 이상 위반시 수출농가에서 제외
- 수출물량 및 수출시기 미이행

파프리카 생산업체와 수출계열화조직의 계약서 (예시)

갑(수출전문조직):

을(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상기 "갑", "을" 은 파프리카 수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품명: 파프리카(색상 및 품종)

제2조 기간: 0000년 월 ~ 0000년 월(기간은 협의하에 결정)

제3조 물량: 연도별/기간별/품종별 수량(k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년													
'0년													
'0년													

제4조 단가: 가격산정은 계약시 계약연도별 월별로 상호 협의하에 미리 결정. 수출물량의 수급분석 결과와 과거 몇 년 동안의 평균값, 향후 기대값을 고려하여 정함.

제5조 출하규격 및 품질

- 잔류농약 및 이물질, 불량과를 제외한 상품
- 파프리카의 규격은 수출업자와 수출국의 선호에 따라 변함

	L	M	S
낱개중량(g)	180~230	140~180	110~140
수량(5kg상자 기준)	24~28	30~34	38~40
표준수량(5kg 상자 기준)	24	32	38

- 수출용 파프리카 품위 규격

품 위	품 위 규 격
무 게	∘ 5kg 기준상자 크기 균일도 90% (무게기준 L, M, S 에 해당하고, 무게가 다른 것이 10%이하인 것)
안전성	· 농약잔류검사에 이상이 없는 것
모 양	◦품종 고유의 벨 모양을 유지하고 형태에 기형과가 없는 것 ◦과경의 정단이 적절한 것
색 택	◦ 품종고유의 색택을 유지하고 선명하고 고른 것 ◦ 품종고유의 색이 선별장 도착기준 95%이상 착색된 것(여름 80%)
흠집정도	· 칼집, 상처 및 약흔 등이 없이 청결한 것
신선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과육이 탄력이 뛰어 난 것
병충해	· 병충해 피해가 없는 것
기타	• 과경의 절단상태가 적절하고 생리장애 및 가벼운 결점이 없는 것

- 제6조 선별: 규격과 품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동선별 실시
- **제7조** 클레임: 상품 품질에 대한 클레임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갑" 또는 "을"로 한다.
- 제8조 훈증 및 통관: 한국, 일본 부두에서 병충해로 인한 훈증 처리될 경우와 잔류농약 등으로 비용발생시 "을"이 부담하고, 운송과정에서 부패된 경우는 "갑"이 책임진다.
- 제9조 박스: 바이어측의 요구사양에 의거 "갑"의 부담으로 대량 제작하고, 관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 제10조 물대지급: 선적 후 0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 수출촉진금: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지자체 수출촉진금은 지급규정에 주한다.
- 제12조 농가이력관리: 생산자이력관리 체제를 위해 계약당사자인 "을"은 재배농가의 영농일지, 농약사용일지 및 양액조성일지 등의 영농자료를 "갑"의 요청시 제시하여야 한다.

2008. . .

갑(수출전문조직): 대표이사 (인)

을(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인)

2.4. 생산·수확 후 관리

가. 생산 관리

○ 파프리카의 내수 및 수출 목표량을 기준으로 전체회의를 통해 계획 수립

- 품종선택: 시장 기호도, 재배난이도, 수확량 등 품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
- 파종일자: Promotion 계획 및 성출하기가 겹치지 않고, 기후에 따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종일자를 선정하여 배정
- 재배색상: 색상별 수확량의 비율을 예측하여 재배면적에 대비한 칼라 비율 배정
- 착과시기부터 정기적으로 예상수확량을 조사하여 ERP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 시기별로 생산량을 예측, 판매조정 및 Promotion 계획에 반영
- 자재수급: 종자, 암면 등 재배에 필요한 자재를 공동구매(수입) 공급
- 생산이력관리: 온실, 내외의 재배환경관리, 농약/천적 사용내역 등을 인터넷을 통해 ERP 시스템에 재배농가가 직접 등록, D/B화하고 전문가가 전체 계약 농가의 작물 관리 상태를 체크해서 필요시 조언하여 생산이력관리를 명확하게 실시
- GAP 도입: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가의 GAP 시행 및 농약대신 천적농법 개발 적용
- 주년수확: 파프리카 생산은 11월에서 익년 7월까지 수확하는 겨울재배와
 6월에서 12월에 수확하는 여름재배로 나누고, 주년 공급을 위해 재배작형별로 계약재배가 계획을 수립함.
- 계약농가의 수확일자 관리를 통해 수집 계획 수립
- 수확시 숙도, 품질규격 범위 내 열매 수확 지도
- 재배농가간 원물의 혼입 방지를 위해 수확박스 파렛트마다 해당 농가 식별 스티커(생산자 ID 번호)를 부착 관리
- 수확 후 각 계약 농가마다 수확내역을 ERP에 직접 등록

나. 수확 후 관리

ㅇ 수확 후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열매 이동

- 저온차량이 수확스케줄에 따라 매일 매일 순회하면서 저온 운송
- ㅇ 수확박스 및 파렛트는 자체 물류기기 공동 이용
- 산지유통센터(APC)나 공동선별장에 입고 후 담당자 입고 체크
- 입고 검사 후 농가별, 칼라별로 구분하여 선별, 포장 대기까지 신속히 운송

다.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주도로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함.
- 자체 품질관리능력, 수출시장별 유통실태, 바이어가 요구하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
 -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품질기준 기초자료 제공
- 품질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품질 매니저 역할 수행
- 계열화 업체 주도로 전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단계에서부터 안전성관리 지도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약 공동구입과 공동방제, 농약사용 기록대장 비치, 수출 전 잔류농약검사 실시 등
- 농약안전사용지도 전문인력 확보
- GAP 인증을 위한 생산이력정보 기록
- 토지 및 재배작목 현황, 관수 및 배수 방법, 재해예방 및 시설현황, 토양관리 방법 현황, 재배유형, 보유 시설 및 농기계 현황
- 생산이력 실천 영농일지: 주요 작업내역 및 소요인력, 재배관리, 생장단계 분석, 병해충예찰 및 방제, 관수, 비료주기, 토양관리, 생육관찰, 재해, 수확 및 선별 출하저장, 농자재구입, 교육모임, 일일영농일지

안전성 분석결과 통보 (예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

수신자: (경 유)

제 목: 안전성 분석결과 통보

안전성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접수 번호	품목	수	거	종류	생산	자명	검출	내역	허용 (pr	·기준 m)	검토 의견
빈오		일자	장소		주소	성명	성분	검출처	국내	수입국	의견

※ 이 분석결과는 안전성 조사시 수거한 시료에 한정된 성적이며, 이 내용을 광고에 이용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전문을 광고 표시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장

2.5. 선별 · 포장

○ 파프리카의 무게 및 수량 규격(L, M, S) 정의

구분	L	M	S
낱개중량(g)	180~230	140~180	110~140
수량(5kg 상자기준)	24~28	30~34	38~40
표준수량(5kg 상자기준)	24	32	38

- 바코드를 이용한 전산화로 유통이력관리
- 계열업체는 농가의 원물 수집 → 선별장에 입고 후 입고확인 등록 → 농가별 식별 ID 번호 부여 → 입하장 대기 → 선별라인 투입 → 선별기 투입 → 선별기준표에 의해 선별 → 박스 포장작업 → 바코드 출력 및 부착 → 생산 등록(바코드-ERP) → 출고등록(바코드 - ERP) 파렛바코드 등록 → 출하 상차 → 수출운송(저온운송차량)

2.6. 마케팅・수출

- 이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을 수행함.
- 각종 판촉물, 학회, 전시회, 시식회 개최를 통해서 한국산 파프리카의 우수성 선전
- 수퍼마켓 혹은 텔레비전 요리사와 함께 파프리카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소개 등 수요 창출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하면서도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
- 현지의 주류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교민시장을 활용한 홍보 및 판촉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주류시장의 잠재적 소비자에 대해 직접 음식을 맛보일 수 있는 시사회를 활용하는 전략 적용
- 신시장 개척, 우수 바이어 발굴, 다양한 수출상품 개발 등
-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과 기존 품목에 대한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 요구
-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생산성이 좋은 다양한 수출상품 개발
-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조리법 개발
- 해외시장 조사 및 수입업체와 계약 체결
- 수출국별로 현지에 적합한 수요 파악 및 수요 창출
- 수입업체와 계약체결

파프리카 수출 계약서(예시)

갑(수출전문조직):

을(수입자):

상기의 갑・을은 한국산 파프리카를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 (1) 상품: 한국산 고랭지 파프리카로 한다.
- (2) 시 기: 2008년 1월 ~ 6월(단, 상호협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함)
- (3) 수량: 0,000 ~ 0,000CTN/주 (단, 산지출하상황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수량변경이 가능함)
- (4) 가격조건: CNF JAPANESE PORE
- (5) 지불조건: T/T BASE (결제기일은 클레임이 없는 경우 배송후 14일 이내로 한다)
- (6) 선 별: 공동선별을 기본으로 하며 갑이 책임을 가지고 행한다.
- (7) 통관: 일본항에 도착 후 어떠한 원인으로(DDVP 등) 일본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처분한다. 반송 및 폐기비용은 갑이 책임을 진다.
- (8) 클레임 처리방법
 - 1. 일본에서 통관 후 을이 지정한 도착장소에서 상품의 상태에 따라 을은 갑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 2. 을은 갑에 발생한 클레임에 대하여 통관후 4일 이내 클레임 관계자료 (내용, 사진 등)를 통지할 것.
 - 3. 클레임 처리방법은 갑, 을 상호간에 적극적인 협으로 처리할 것.

- (9) 훈증: 일본항에 도착 후, 통관중의 검역검사 등의 결과, 해충이 붙어 있거나 훈증되는 경우, 훈증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10) 중재: 상호계약의 불이행 및 협의 불가능 할 경우 한국 측의 대한상사 중재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
- (11) 기타: 본 계약상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 및 상호협의에 준한다.

상기와 같이 파프리카 매매계약서에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명 후 각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수출자: (인)

(을) 수입자: (인)

2.7. 대금 정산 관리

- 수출대금의 정산 주체는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에서 정산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정산해야 함.
- 물품 선적 후 가능한 빨리(예를 들어 7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
- 수수료율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름

- 정산 및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열화 운영위원회」 등에서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 정산 및 회계관리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금(보조금, 융자금), 수출 대금, 국내시장 판매대금 등 「계열화 운영위원회」가 정한 모든 금액을 포함 해야 함.
- 필요시 회계처리사항에 대해 매년 회계감사 실시
- 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 (계열화 업체 평가 인센티브)

2.8. 결산 및 사업평가

- ㅇ 수출기간 종료 후 수출결과 결산 및 공개함.
- 결산 회의에서 계열화조직 수출 정산내용과 수출 효과 등을 설명
- 이러한 결산보고는 조직원의 신뢰와 결속력을 증대시킴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수익 운영방안 등을 협의함.
- 생산농가로 하여금 계열화 조직의 자본에 대해 출자를 유도
- 계열화 조직 구성원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해 자금적립을 유도
- 또한 개선방안과 조직 강화, 수출 증대방안에 대해 논의

□ 일본 수입통관시 잔류허용기준 초과검출로 문제된 농약

농약품목명	상표명	시기	대상작물	비고	
Chlorpyrifos 크로르피리포스	더스반, 명사수, 충모리, 그로포, 폭격기,	2001	파	미등록	
(수화제, 유제, 입제) 크로르피리포스입상수화제 크로르피리포스미탁제	크로르피리포스 선발대 거포	2003	오이 미나리	미등록	
D' 11 (DDI/II)		1999	오이	미등록	
Dichlorvos(DDVP) 디디브이피유제	디디브리피, 옥구슬	2003	파프리카	미등록	
9959411/11		2005	딸기	미등록	
EPN	시회에 무그리	1999	방울토마토	미토로	
이피엔유제	이피엔, 무궁탄	2000	방울토마토	미등록	
Ethoprophos	ובגוג ווכח	2001 2002	홍고추	안전사용기준	
에토프입제	모캡, 에스캅	2003	파프리카	미준수 미등록	
		2003	피망		
Methidathion 메치온유제	수프라사이드, 명궁 수—라치온, 메치사이드, (영일, 에스엠)메치온	2001	파프리카	미등록	
Chlorpyrifos 크로르피리포스 함유농약	강타자, 진굴탄 등	2005 2006	파프리카	미등록 안전사용기준위반	

□ 일본 수출농산물에 대한 사용금지 농약

성분명	농약품목명	상 표 명*	비 고	
Cybovetin	싸이헥사틴수화제	영일싸이틴, 프릭트란, 응골로, 사이헥사틴	응애약	
Cyhexatin	비펜스린·사이헥사틴 수화제	비상구		
	아씨틴수화제	페로팔, 경농아씨틴, 이비엠싸이트, 응애왕	응애약	
Azocyclotin	아조싸이클로틴 액상수화제	응애왕	응애약	
	피리다벤·아조싸이클로틴 수화제	완승	응애약	
Daminozide	비나인수화제	미성비나인	신장억제약	

^{*} 일본에서 불검출 대상농약 중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는 농약

□ 수출농산물농약사용지침 (일본)

적 용	농 약 품 목 명	· 명	안전사	용기준	잔류 ⁽	허용기준 ppm)
적 용 병해충 갈색무늬병 반점세균병 세균성점무 늬병	중 약 품 축 · 8	\(\delta \) \(\del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가새 무.니벼	Tebuconazole 터부코나 <u>졸</u> (우제)	호리쿠어	10	3	0.5	0.5
설계 T 시청	Fluazinam 후루아지남(수화제)	후론사이드	5	4	(0.3)	0.3
반점세균병	KasugunycinCopper oxychtoride 가스란(수화제)	가스란	2	5	(0.04) 면제	- 면제
	Copper hydroxite 쿠퍼(수화제)	코사이드, 쿠퍼사이드 (경농, 영일)쿠퍼	-	-	면제	면제
계구서저무	Kasugamycin 가스가마이신(입상수화제)	메가폰	2	3	(0.04)	-
세판/정점구 늬병	Kasugamycin Thiophanate-methy 가스가마이신 지오파네이트메칠(액상수화제)	골든벨	2	3	(0.04) (3c)	- 5c
	Dimethomorph 디메쏘모르프(수화제)	포룸, 에이스,(영일) 디메 <u>쏘모르프</u>	3	4	(2)	0.5
	Dimethomorph Mancozeb 디메쏘모르프만코지(수화제)	포름만	14	3	(2) (1d)	0.5 1d(Codex)
	DimethomorphCopper oxychloride 디메쏘모르프염기성염화동 (수화제)	포룸씨	3	4	(2) 면제	0.5 면제
액 병	DimethomorphPropineb 디메쏘모르프 프로파네브(수화제)	균자비	7	3	(2) (1d)	0.5 1d(Codex)
	Cyazofanid 시아조파미드(액상수화제)	미리카트	3	4	1	2(고추)
	Azoxystrobin 아족시스트로빈	오티바, 아족시스트로빈	3	5	(2)	2
	AzoxystobinChlorothalonil 아족시스트로빈 크로로타로닐(액상수화제)	오티바옵티	3	3	(2) 7	2 7
	OxadixylChlorothalonil 옥시딕실 타로닐(수화제)	앙콜, 크린힛	14	4	(5) 7	0.1 7

 적 용	5	al v m	안전사	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Oxadixyl · Propineb 옥사프로(수화제)	굳케어플러스	7	4	(5) (1d)	0.1 1d(Codex)	
	Zoxamide · Cymoxanil 족사마이드,싸이녹시닐(수화제)	카니발	3	4	(0.3) (0.2)	0.3 0.1	
	Copperhydroxide 쿠퍼(수화제)	코사이드, 경농쿠퍼, 영일쿠퍼, 쿠퍼사이드 쿠퍼	-	-	면제	면제	
역 병	Propamocarb hydrochloride 파모(액제)	프리엔	21	2	1	1	
	Pyraclostrobin · Dimethomorph 피라클로스트로빈 디메쏘모르프 (입상수화제)	캐스팅, 카브리오팀	7	3	(1) (2)	0.5 0.5	
	Fluazinam 후루아지남(수화제)	후론사이드	5	4	(0.3)	0.3	
	Fluazinam 후루아지남(액상수화제)	모두랑	7	4	(0.3)	0.3	
	Diethofencarb · Carbendazim 디에토펜카브 · 가벤다(수화제)	깨끄탄	7	3	5 (3)	5 5	
	Dichlofluanid (디크론(과립훈연제)	유파렌	7	5	15	2	
	Dichlofluanid (디크론(수화제)	유파렌	3	3	15	2	
케비 고리	Triflumizole 리프졸(수화제)	트리후민, 리프졸	3	4	5	5	
잿빛곰팡 이병	Iprodione 이프로(수화제)	로브랄, 군사리 새시로, 이비엠조테나 새노브란	5	3	10	5	
	Iprodione · Thiophanate-methyl 이프로지오판(수화제)	다스린, 이프로지오판	3	4	10 (3c)	5 5c	
	Thiophanate-methyl · Triflumizole 지오판리프졸(수화제)	굳타임 지오판리프졸	3	4	(3c) 5	5c 5	
	Thiophanate-methyl · Sulfur 지오판유황(액상수화제)	아싸유황 지오판유황	3	4	(3c) 면제	5 면제	

 적 용	L AL T II RI	ਪੀ ਕਾਲੀ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Tebuconazole,Tolyffuanid 터부코나졸 토릴후루아니드 (수화제)	엄지	5	3	0.5 (2)	0.5
	Fenhexand 펜엑사미드(수화제, 액상수화제)	텔도	3 5	3 3	2	-
잿빛곰팡이	Polyoxin B 포리옥신(수용제)	더마니	7	5	(0.05)	-
병	Procymidone (프로시미돈(과립훈연제)	스미렉스, 너도사 영일프로파, 프로파	5	3	5	5
	Procymidone 프로시미돈(수화제)	스미렉스, 팽이탄, 너도사, 아비넴오케이, 영일프로파, 팡자비, 프로파	5	3	5	5
	Fluazinam 후루아지남(수화제)	후론사이드	5	4	(0.3)	0.3
	Carbendazim · Kasuganycin 가벤다, 가스신(수화제)	고추탄	7	4	(3) (0.04)	5 -
	Kasugamycin · opper oxychloride 가스란(수화제)	가스란	2	5	(0.04) 면제	- 면제
	Dimethomorph · Mancozeb 디메쏘모르프 만코지(수화제)	포름만	14	3	(2) (1d)	0.5 1d(Codex)
	Dithianon 디치(액상수화제)	델란	7	5	(0.3)	0.3
탄저병	Dithianon 디치(임상수화제)	델란	7	3	(0.3)	0.3
	Azoxystrobin 이족시스로빈(액상수화제)	오티바, 아족시스트로빈	3	5	(2)	2
	Oxadixyl · Chlorothalonil 옥시닥실, 타토닐(수화제)	앙콜, 크린힛	14	4	(5) 7	0.1 7
	Thiophanate-methyl 지오판(수화제)	톱신엠, 톱네이트엠,(삼공, 정밀, 성보, 아리)지오판, 탑건, 이비엠지이트, 슈퍼톱탄	3	3	(3c)	5c
	Thiophanate-methyl · Triflumizole 지오판리프졸(수화제)	굳타임, 지오판리프졸	3	4	(3c) 5	5c 5

 적 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	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병해충	· 한 국 국 경	78 並 78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Thiophanate-methyl · Suffur 지오판유황(액상수화제)	아싸유황, 지오판유황	3	4	(3c) 면제	5c 면제
	Kresoxim-methl 크레속심메칠(입상수화제)	해비치	7	2	2	2
	Kresoxim-methyl · Carbendazim 크레속심메칠,가벤다짐(수화제)	젤존	5	3	2 (3)	2 5
	Chlorothalonil 타로닐(수화제)	다코닐,금비라,골로루,새나리, 토우크, (열일,아리)타로닐	7	4	7	7
	Tebuconazole 터부코나졸 (수화제, 액상수화제)	실바코, 스텔스	10	3	0.5	0.5
탄저병	Tebuconazole 터부코나졸(유제)	호리쿠어	10	3	0.5	0.5
	Prochloraz manganese complex 프로라츠망간(수화제)	스포르곤,프로라츠망간	5	2	(1)	3
	Pyraclostrobin 피라클로스트로빈(유제)	카브리오	2	3	(1)	0.5
	Pyraclostrobin boscalid 파라클로스트로빈,보스칼리드 (입상수화제)	벨리스플러스	2	3	(1) 1.2	0.5
	Pyraclostrobin.dimethomorph 피라클로스트로빈, 디메쏘모르프(입상수화제)	캐스팅, 카브리오팀	7	3	(1) (2)	0.5 0.5
	Fluazinam 후루아지남(수화제,액상수화제)	후론사이드, 모두랑	5 7	4 4	(0.3)	0.3
	Myclobutanil 마이탄(수화제)	시스텐	7	3	1	1
흰가루병	DBEDC(dodecyl benzensulf onate bis-ethylene diamine copper(II complex salt) 산코(유제)	산요루	3	3	(5)	-
	Azoxystrobin 이족시스트로빈(액상수화제)	오리바, 아족시스트로빈	3	5	(2)	2

 적 용	노아포디머	al or ed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Suffer 유황(입상수화제)	쿠무러스	-	-	면제	면제
흰가루병	Tehuconazole 터부코나졸(수화제)	실바코	10	3	0.5	0.5
	Tenaconazole 테트라코나졸(유탁제)	에머난트	3	3	(1)	1(고추)
가세미나병	Dlazinon 다수진(입제)	다이아톤, 시니나, 다이아곰, 땅땅, 다이진, 다수진	정식전	1	0.1	0.5
	Spinosad 스피노사드(액상수화제)	올가미, 심포니	2	3	2	0.1(수박)
	Acetamiprid 아세타미프리드(수화제)	모스피란,아세타미프리드	3	5	5	5
꽃노랑	Acetamiprid 아세타미프리드(액제)	신엑스	2	3	5	5
초'엉 총채벌레	Emamectin benzoate 에마멕틴벤조에이트(유제)	에이팜	3	3	(0.2)	0.05
	Chlorfenapyr 클로로훼나피르(액상수화제)	섹큐어, 플로르헤나피르	3	3	(1)	0.7
	Clothinanidin Chlorfenapyr 클로치아니딘 클로로훼나피르(유제)	섬광	3	3	3 (1)	2 0.7
	Delthamerthin 델타린(액상수화제)	데시스, 델타린	3	4	0.5	0.2
	Delthamethrin 델타린(유제)	데시스, 장원, 에스엠멜타린, 델타린	3	3	0.5	0.2
담배나방	Lufenuron 루페누론(유제)	파밤탄, 매치	3	3	1	0.5
	Methomyl 메소밀(수화제)	란네이트,(성보, 미성, 이비엠, 영일)메소밀	7	2	(0.7)	1
	Methomyl 메소밀(dor제)	란네이트,(삼공, 동부,정밀, 미성, 성보, 이비엠)메소밀, 메소린	7	2	(0.7)	1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기준			용기준 o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Methoxyfenozide 메톡시페노자이드(액상수화제)	런너	7	3	(3)	-
	Bifenthrin 비펜스린(입상수화제)	켑쳐	10	3	(0.4)	0.5
	Acetamiprid, Indoxacarb 아세타미프리드,인독사카브 (수화제)	맹타	2	2	5 (1)	5 1
	Alpha-cypermethrin 알파스린(유제)	화스탁, 이미엠하나로, 바이엘알파스린, 시원탄, 영일알파스린	3	3	2	0.5
	Alpha-cypermethrin 알파싸이퍼메스린(입상수화제)	콩코드	3	3	2	0.5
	Emamectin benzoate 에마멕틴벤조에이트(유제)	에이팜	3	3	(0.2)	0.05
담배나방	Esfenvalerate 에스펜발러레이트(유제)	적시타	3	5	0.5	0.5
	Esfenvalerate-Malathion 에스펜발러레이트 마라치온(유제)	왕스타	7	5	0.5 0.5	0.5 0.5
	Indoxacarb 인독사카브(수화제)	암메이트	3	3	(1)	1
	Indoxacarb 인독사카브(액상, 입상수화제)	스튜어드골드 수튜어드, 아바타	5 5	2 3	(1)	1
	Diflubenzuron 주론(수화제)	디밀린, 초심	3	3	(1)	1
	Chlorfluazuron 쿠로르푸르아주론(유제)	아타브론	3	3	2	0.5
	Pinmiphos-methyl · Cypermethrin 포리스(유제)	싱싱	3	3	1 2	1 0.5
	Fenvalerate 프로싱(유제)	스미사이딘, 아비엠데이트 멸나방탄	10	2	0.5	0.5
	Lambda-cyhalothrin 할로스린(수화제)	주렁, 바로싹	5	3	1	1
	Lambda-cyhalothrin 할로스린(유제)	주렁, 첨병, 할로스린	10	2	1	1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오 이 총채벌레	Spinosad 스피노사드(액상수화제)	올가미, 심포니	2	3	2	0.1(수박)
	Thiamethoxam 치아메톡삼(입상수화제)	아타라, 치아매특상	3	3	(1)	1
	Chlorfenapyr · Bifenthrin 크로르훼마피르 · 비펜스린 (수화제)	파발마	3	3	(1) 0.4	0.7 0.5
온실라루이	Imidachoprid 이미다클로프리드(입제) 이미다클로프리드(액상수화제)	코니도, 메테랑, 영일이미다, 노다지	30 30(양액)	2 2	(3)	1
작 은 뿌리 파 리	Imidacloprid 이미다클로프리드(수화제)	코니도, 영일아미다, 코사인	3	4	(3)	1
	Diflubenzuron 주론(수화제)	디밀린,초심	3	3	(1)	1
	Dinotefuran 디노테푸란(수화제)	오신	3 30(양백)	3 2	(5)	0.5(고추)
	Dinotefuran 디노테풀(입상수화제)	펜텀	5	2	(5)	0.5(고추)
진딧물	Metomyl 베소밀(수화제)	란네이트, (성보, 미성, 이비엠,영일)매소밀	7	2	(0.7)	1
	Beta-cyfluthrin 베타싸이플루스린(유제)	불독, 최고봉	7	6	5	0.2
	Bifethrin · Imidacloid 비펜스런 ·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	코만도	3	2	(0.4) (3)	0.5
흰가루병	Acetamiid 아세타미프리드(수화제)	모스피란. 아세타미르리드	3 30(양핵)	5 2	5	5
	Apha-cypermethrin 알파스린(유제)	화스락, 이비엠하나로, 바이엘알파스린, 시원탄, 영일알파스린	3	3	2	0.5
	Esfenvalerate 에스펜발러레이트(유제)	적시타	3	5	0.5	0.5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	} 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Esftenvalerate · Malathion 에스펜발러레이트마라치온 (유제)	왕스타	7	5	0.5 0.5	0.5 0.5
	Esfenvalerate · Fenitrothin 에스펜발러레이트 · 에프(유제)	신파마치온	3	4	0.5 0.2	0.5 0.1
	Imidacloprid 이미디플로프리드(수화제)	코니도, 영일이미다, 코사인	3	4	(3)	1
	Imidacloprid 이미다클로프리드(액상수화제)	코니도	5 30(양액)	3 2	(3)	1
	Imidacloprid 이미다클로프리드(입제)	코니도, 베테랑, 영일이미다, 노다지	정식기	1	(3)	1
	Thiamethoxan 치아매특삼(입상수화제)	아타라	정식기	1	(1)	1
	Thiamethoxam 치아매특삼(입상수화제)	아타라, 치아매측삼	3 30(양액)	3 2	(1)	1
진딧물	Thiacloprid 치아클로프리드(액상수화제)	칼립소	3 30(양액)	3 2	(5)	1
	Carbosulfan · Imidaclopred 카보설판 ·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	새강자	3	3	(1) (3)	- 1
	Clothianidin 클로치아니딘(수화제, 액상수화제, 수용성입제)	박카드, 세시미, 똑소리	3	3	3	2
	Clothianidin 클로치아니딘(입제)	명가, 빅카드	정식진	1	3	2
	Pirimiphos-meth- yl·Cypermethrin포리스(유제)	싱싱	3	3	1 2	1 0.5
	Fenvalerate 프로싱(유제)	스미사이딘, 이비엠데이트, 멸나방탄	10	2	0.5	0.5
	Pymethrozine 피메트로진(수화제)	체스	3 30(양액)	4 2	2	1
	Pymetrozine 피메트로진(입제)	체스	육묘상	1	2	1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진딧물	Lambda-cyhalothrin 할로스린(수화제)	주렁, 바로싹	5	3	1	1
	Lambda-cyhalothrin 할로스린(유제)	주렁, 참병. 할로스린	10	2	1	1
	Lambda-cyhalo- thrin · Pirimiphos-methyl 할로스린 · 피리포(유제)	싱글	5	2	1 1	1 1
차먼지응애	Chlorfenaper 클로르헤나피르(액상수화제)	섹큐어, 플로르헤나피르	3	3	(1)	0.7
	Tebufenpyrad 테부페녹수론(분산성액제)	파라니카	3	3	(0.5)	0.5
	Flufenoxuron 플루페녹수론(분산성액제)	카스케이드, 영일플루페녹수론, 플루페녹수론	7	3	(2)	0.3
	Pyridaben 피리다벤(수화제)	산마루	3	3	3	3

참고 문헌

권영철. 2002. 「글로벌 수출마케팅」. 무역경영사.

김경필 외. 2004.9. 「농산물 공동계산 출하의 중요성과 발전단계별 추진전략」. 한국식품 유통학회, 21권 3호. 한국식품유통학회.

김병률 외. 2005.12.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외. 2006.4. 「농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확대전략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김병률 외. 2008.1. "농식품 수출기업의 성공요인". 「농업전망 2008 (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진석 외. 2000.9. 「경남지역 농산물 수출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3권 5호. 한국산업경제학회.

농림수산식품부. 2007.12. 「농식품 수출관련기관 혁신포럼」. 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7.12. 「농식품 수출 중장기 종합대책」. 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7.12. 「농식품 수출관련기관 혁신포럼」. 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2. 「'08년 농식품 수출 목표 및 중점 추진계획(안)」. 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4. 「계열화 수출전문업체 육성 기본계획(안)」. 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05.4. 「우리농식품 수출확대 컨설팅」.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07.12. 「주요농산물 수출시장 동향 및 현안분석」.

농수산무역신문. 2008.1. 「남상원의 수출농업」.

농수산물유통공사. 2004. 「미국의 버섯산업의 현황과 수출확대 방안」

농수산물유통공사. 2004. 「한국산 농산물 해외유통 실태조사: 채소류」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12. 「한국 농식품 수출 가이드북」.

농수산물유통공사. 2008.2. 「'07년 농식품 수출실적 분석 및 시사점」. 내부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8.2. 「주요 수출 품목별 대책」. 내부자료.

농촌진흥청. 2005. 「대일 농산물 수출마케팅전략 개발」. 과학원예 제11권 제5호.

박성호. 2000.3. 「경남지역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산업경제연구 제13권 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성명환 외. 1998.12. 「주요 농산물의 대일 수출 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춘호. 2003. 「일본에서의 한국산 파프리카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양승룡 외. 2001. 「한국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의 시장지배력 분석」. 농업경제 연구 42, 1. 한국농업경제학회.

윤장근. 1999. 「원예작물 수출시책 및 컨설팅」.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재욱. 2001. 「착색단고추(파프리카) 재배현황 및 수출전망」. 시설원예연구.

임송수 외. 1999.4. 「감귤 자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창곤 외. 2003.12. 「신선채소류의 수출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수출상품화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창곤. 2003.12.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실태와 발전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용제. 2006. 「농수산물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응수. 2005.9. 「한국의 식품 수출경쟁력 분석」. 식품유통연구 제22권 3호. 한국식품 유통학회.

<인터넷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 http://www.npqs.go.kr/homepage/main/index.asp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 http://www.kamis.co.kr/jsp/index.jsp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세계식량기구(FAO) 홈페이지 http://faostat.fao.org/faostat/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sunplus.or.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C2008-19-3

파프리카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모델 및 매뉴얼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6.

발 행 2008. 6.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http://www.khip.co.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